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2.23]

- 건설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번지 일원
- 공급유형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중소기업 근로자)
- 공급호수 : 통합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142호 (전용22㎡) ※ 총 건설호수 316호

- 금회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급센터(031-226-313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3(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GH 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공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으로서 직업·신분요건 및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영구, 행복)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문 7~12페이지 등 참조]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변경(임대조건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합산 거주기간으로 14년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해당 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예외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 기타사항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 [GH 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PC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1. 공급대상

■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기타공용	주차장					
총계						142	142		
22A	22.69	17.87	7.76	29.26	77.58	142	142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개별난방	'26년 11월 (예정)

- 22A형 주택은 발코니 확장 적용 세대입니다.
- 22A형의 주택에는 인출식테이블, 반침장 또는 불박이장, 인덕션, 냉장고, 냉장고장, 에어컨, 세탁기 등이 설치됩니다.
- 총 주차대수는 786대로 통합공공임대 276대(전기차 14대, 장애인 6대, 경형5대)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510대(전기차 27대, 장애인 11대, 경형 34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 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GH 주택청약센터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입주자의 입주 시기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6.01.06(화) 10:00 ~ '26.01.09(금) 17: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6.01.22(목) 14:00 이후	'26.02.02(월) ~ '26.02.05(목) 10:00 ~ 17:00 * 12~13시 제외	'26.04.23(목) 14:00 이후	전자	'26.05.12(화) 10:00 ~ '26.05.15(금) 17: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	'26.05.12(화) ~ '26.05.15(금) 10:00 ~ 17:00 * 12~13시 제외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공급센터 (하단 주소참고)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공급센터 (하단 주소참고)		

-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1층 102호 (공급센터)
-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 계약체결 등 현장업무 시간 : 10~17시 ※ 점심시간(12시~13시), 주말 및 휴일 제외
- 현장 신청접수 및 현장 계약체결 시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에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청약-심사서류제출)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공지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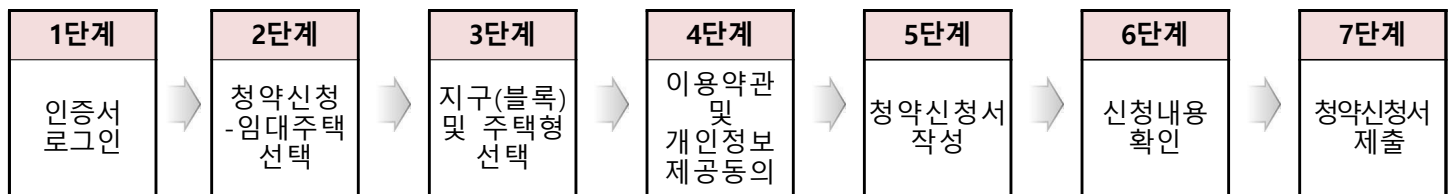
신청방법

■ 유의사항

- 청약 신청접수는 신청자가 신청(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작성)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GH 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PC)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및 취소도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PC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GH 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인터넷(PC)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및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이 낮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전 청약신청 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PC)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01.22)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기간에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GH 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 서비스 → 서류제출대상조회 → 서류제출자 당첨조회
-----------------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자격검증 후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35~90%) 적용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모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임대조건 공통사항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17,604	1,196,007	1,674,409	2,392,013	2,631,214	2,870,416	3,109,617	3,588,020	3,827,221	4,066,422	4,305,623	4,544,825	4,784,026
2인	1,179,797	1,966,329	2,752,861	3,932,658	4,325,924	4,719,190	5,112,455	5,898,987	6,292,253	6,685,519	7,078,784	7,472,050	7,865,316
3인	1,507,606	2,512,677	3,517,747	5,025,353	5,527,888	6,030,424	6,532,959	7,538,030	8,040,565	8,543,100	9,045,635	9,548,171	10,050,706
4인	1,829,332	3,048,887	4,268,441	6,097,773	6,707,550	7,317,328	7,927,105	9,146,660	9,756,437	10,366,214	10,975,991	11,585,769	12,195,546
5인	2,132,458	3,554,096	4,975,734	7,108,192	7,819,011	8,529,830	9,240,650	10,662,288	11,373,107	12,083,926	12,794,746	13,505,565	14,216,384
6인	2,419,442	4,032,403	5,645,364	8,064,805	8,871,286	9,677,766	10,484,247	12,097,208	12,903,688	13,710,169	14,516,649	15,323,130	16,129,610
7인	2,696,528	4,494,214	6,291,900	8,988,428	9,887,271	10,786,114	11,684,956	13,482,642	14,381,485	15,280,328	16,179,170	17,078,013	17,976,856
8인	2,973,615	4,956,026	6,938,436	9,912,051	10,903,256	11,894,461	12,885,666	14,868,077	15,859,282	16,850,487	17,841,692	18,832,897	19,824,102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23)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 기본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18페이지 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 【22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4,043,000	702,150	13,340,850	141,260	+	13,000,000	27,043,000	65,430
					-	9,000,000	5,043,000	167,510
2구간	16,049,000	802,450	15,246,550	161,440	+	16,000,000	32,049,000	68,110
					-	11,000,000	5,049,000	193,520
3구간	20,061,000	1,003,050	19,057,950	201,810	+	20,000,000	40,061,000	85,140
					-	14,000,000	6,061,000	242,640
4구간	26,080,000	1,304,000	24,776,000	262,350	+	26,000,000	52,080,000	110,680
					-	18,000,000	8,080,000	314,850
5구간	32,098,000	1,604,900	30,493,100	322,890	+	33,000,000	65,098,000	130,390
					-	22,000,000	10,098,000	387,06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6,111,000	1,805,550	34,305,450	363,260	+	37,000,000	73,111,000	147,430
					-	25,000,000	11,111,000	436,18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시행 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X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 금회 공급하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2025.12.23. 공고)의 상한 임대조건은 기본 임대조건(7페이지 참조)과 동일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시행 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2A	2,403,000	120,150	2,282,850	47,850	+	-	-	-
					-	1,000,000	1,403,000	50,770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할증 등)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을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 금액'과 '갱신 직전 임대시세에 인상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text{보증금} = (\text{갱신시점} \text{ 임대시세}) \times (\text{갱신시점} \text{ 소득구간계수}) \times 35\%$$

$$\text{임대료} = (\text{갱신시점} \text{ 임대시세} \times \text{시장전환율}) \times (\text{갱신시점} \text{ 소득구간계수}) \times 65\% \div 12$$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합니다.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되며 시장전환율을 4%로 가정했을 때,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의 임대조건

[단위 : 원]

구분	시중 전세시세	소득구간 계수	임대조건(시장전환율 4% 가정)		산출내역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초계약	100,000,000	(1구간) 35%	12,250,000	75,830	[최초 모집공고 기준 임대시세] = 100,000천원 ▶ 보증금 산출식 $100,000\text{천원} \times 40\% \times 35\% = 14,000\text{천원}$ ▶ 월임대료 산출식 $100,000\text{천원} \times 4\% \times 40\% \times 65\% \div 12 = 86,660\text{원}$
		(2구간) 40%	14,000,000	86,660	
		(3구간) 50%	17,500,000	108,330	
		(4구간) 65%	22,750,000	140,830	
		(5구간) 80%	28,000,000	173,330	
		(6구간) 90%	31,500,000	195,000	
1차 갱신계약	120,000,000	(1구간) 35%	12,862,000	79,620	[1차 갱신시점 적용시세] = 105,000천원 ※ 105,000천원(갱신직전 임대시세의 5%를 인상한 금액)과 120,000천원(갱신시점의 시중 전세시세) 중 작은 금액 ▶ 보증금 산출식 $105,000\text{천원} \times 50\% \times 35\% = 18,375\text{천원}$ ▶ 월임대료 산출식 $105,000\text{천원} \times 4\% \times 50\% \times 65\% \div 12 = 113,750\text{원}$
		(2구간) 40%	14,700,000	91,000	
		(3구간) 50%	18,375,000	113,750	
		(4구간) 65%	23,887,000	147,870	
		(5구간) 80%	29,400,000	182,000	
		(6구간) 90%	33,075,000	204,750	
2차 갱신계약	130,000,000	(1구간) 35%	13,505,000	83,600	[2차 갱신시점 적용시세] = 110,250천원 ※ 110,250천원(갱신직전 임대시세의 5%를 인상한 금액)과 130,000천원(갱신시점의 시중 전세시세) 중 작은 금액 ▶ 보증금 산출식 $110,250\text{천원} \times 35\% \times 35\% = 13,505\text{천원}$ ▶ 월임대료 산출식 $110,250\text{천원} \times 4\% \times 35\% \times 65\% \div 12 = 83,600\text{원}$
		(2구간) 40%	15,435,000	95,550	
		(3구간) 50%	19,293,000	119,430	
		(4구간) 65%	25,081,000	155,260	
		(5구간) 80%	30,870,000	191,100	
		(6구간) 90%	34,728,000	214,980	

- 소득(6구간), 자산 및 거주기간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①~③)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할증조건

①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 이하	105%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115%	130%

※ 30%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 2회차 갱신 시 20%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②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③ 최대 거주기간 초과

-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10년 또는 14년, 연장된 거주기간)을 초과한 세대는 당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하며,** 주택명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①~③)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갱신계약 시

① 소득기준(*)	② 자산기준	③ 거주기간	최종 할증률
110%	130%		130%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임대조건
① 세대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세대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수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6구간 적용 (할증 미적용)

- (자산기준) 출산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출산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총자산가액	337,000,000원	371,000,000원	405,000,000원
자동차가액	45,630,000원	50,2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수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20%)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5. 기본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 소득 등)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23) 현재 공급신청자가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서 ②직업·신분요건 및 ③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④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제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분요건 중 청년 계층으로 청약신청하는 자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외국인 등 관련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취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인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금액]

구 분	출산자녀수*		
	없음 (기준)	1명 (+10%)	2명 이상 (+20%)
총자산가액	337,000,000원 이하	371,000,000원 이하	40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0,000원 이하	50,200,000원 이하	54,76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20%)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 신분요건 중 청년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确定为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은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를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6.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비율]

구 분		출산자녀수*		
		없음 (기준)	1명 (+10%)	2명 이상 (+20%)
세대원수 (태아 포함)	1인 (+20%)	170%	-	-
	2인 (+10%)	160%	170%	-
	3인 이상 (기준)	150%	160%	170%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출산자녀수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20%)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갭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 및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 | |
|--|---------------------------|
|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6.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직업요건 및 신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업 및 신분요건에 따른 구분없이 공급형별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 건설지역(광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시, 입주자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요건

직업요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 신분요건

신분요건 (※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출생일 : 1985.12.24 ~ 2006.12.23)	
②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6세 이하 자녀 가정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2018.12.24.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6세 이하(2018.12.24.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되며, 자산 및 소득검증도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 세대주인 청년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하되, 자산 및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직업·신분요건에 따른 구분없이 공급형별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시, 입주자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7. 신청서류 제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2.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서류 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 이후 청약신청 철회는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필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 (작성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서명(홀림서명 금지)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GH공사 양식 (신청자 작성)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4]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G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5]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GH공사 양식 (신청자 작성)
서약서 [양식6]	· 신청자격 서약 후 서명하여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 내역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내역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증명서로 발급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기타	· 기타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직업요건(중소기업 근로자) 제출서류 **【필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 신청내역 증빙 제출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전체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재직중인 직장

- ※ 청약신청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기간 : 2026.2.2(월) ~ 2.5(목))**을 하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서류제출기간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화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우리공사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신청결과(장기근속자로 신청한 경우 장기근속자 여부 포함)를 통보받아 근무이력 및 근무기간을 확인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회신 내역이 적격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직업요건 등 인정됨)
- ※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경우]** 광주시로 입주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신분요건 제출서류 **【필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상세'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GH공사 양식 [양식7], [양식8], 행정복지센터
장기근속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태아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입양관계 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국가보훈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 신청자만 제출】**

구 분	비 고
공급신청서 [양식1]	· 공급형별 선택 및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공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 인터넷 청약신청자 제출 불요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예비배우자 포함) [양식9]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분이어야 함(대리발급분 인정불가)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을 시 신청·계약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 외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01.22)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자 본인이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기간에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GH 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 서비스 → 서류제출대상조회 → 서류제출자 당첨조회
-----------------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자격검증 후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①,②,③ 중 택일]

구분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 기간 : '26.02.02(월) ~ 02.05(목) 10:00 ~ 17: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접수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온라인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급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GH주택청약센터 전자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온라인청약 - 심사서류제출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② 현장방문 제출	- 기간 : '26.02.02(월) ~ 02.05(목) 10:00 ~ 17:00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1층 102호 (공급센터) ※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우편 제출	- 기간 : '26.02.02(월) ~ 02.05(목)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일반우편 불가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02.0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송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1층 102호 (공급센터) * 봉투 겉면에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서류제출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현장방문 제출은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우리공사가 서류 원본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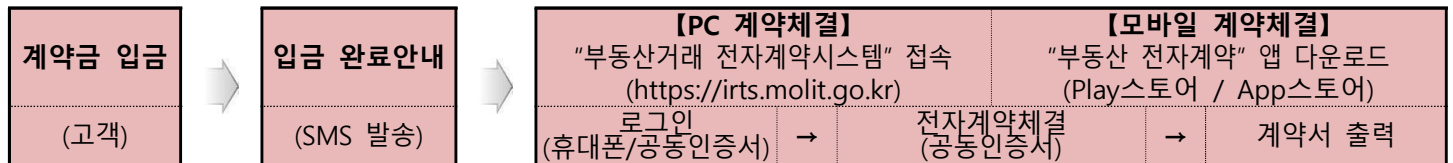
당첨자 발표 **【2026.04.23(목), 14: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여부는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및 공급센터(031-226-31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6.05.12(화) 10:00 ~ 05.15(금) 17:00】** ※ 계약금 입금 : 05.14(목) 17:00 까지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및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내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공지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6.05.12(화) 10:00 ~ 05.15(금) 17:00】** ※ 계약금 입금 : 05.14(목) 17:00 까지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장소는 당첨자에게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 자 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부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입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 중 '2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단지에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자 재모집을 통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23)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②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③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등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및 검색결과 세부내역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첨자 발표 전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함)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 갱신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 가능
- ③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4. 갱신 임대조건」 임대조건에 따른, 자산·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안내]**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지급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지급**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1개월 전까지 해약 신청하셔야 하며, 주말 및 휴일 퇴거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해지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하며 **1개월 이내 비용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 (임차인 등*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16~17페이지),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 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차량가액에 부가세가 미포함된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차량가액이 됨
 - ※ 국세청 홈택스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금액 중 낮은금액 인정됨
 - 단지 관리규약 및 단지 여건에 따라 차량 등록 가능 대수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량등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등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색상은 인쇄상태에 의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평면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투시도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 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 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에 표현된 최고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기준으로 작성된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홍보물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11.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지구여건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특화권역 및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외부여건은 추후 정부정책이나 상위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서측에 폴리텍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GH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구는 포은대로측에 위치해 있으며, 주야간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지하주차장 경고등,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 현관등의 단차 및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여건상 홍보물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GH 및 시공사에 각종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공원, 하천으로 인하여 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입주 후 단지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전력기기,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 노상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형태,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과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공동기반 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공용으로 사용예정입니다.
- 지하 1층~2층 주차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전용으로, 오피스텔 입주자가 사용시 별도 주차비가 발생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단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 환 작동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급속, 완속충전기)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급수, 급탕, 난방, 소방 등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일부 PIT층의 출입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및 제연댐퍼가 설치되고 위치는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욕실이 설치되고, 욕실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신발장 후면부 및 하부는 도배지가 시공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지상1층 도로는 소방전용도로이므로 차량통행 및 주차가 불가하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건축물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원칙상 불가하며, 임의의 못박음이나 드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등의 옥외 시설물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를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가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1~2층 주차장에는 환기용 급배기 환이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단위세대 내 비디오폰 사용 시 일시적 장애로 인해 작동불능이 될 수 있기에 입주 시 단말기 화면에서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방문자와 통화, 경비실호출시험등 사전에 기능을 확인해야 됩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 등 동결 및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발열선이 설치되며 전기 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본 임대주택은 오피스텔에 해당함에 따라 관리비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지 경계로 철제난간 또는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복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창 위치는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원칙상 불가합니다.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스탠드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주방가구의 일부공간은 각종배관,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의 설치로 인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3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7m이상으로 탑차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276대(오피스텔)가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사용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는 입주자와 지역편의시설 이용자 및 지식산업센터 이용자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 홀 및 지하주차장 등은 내·외부 온도편차에 따른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팬을 가동 하더라도 결로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관련 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될 계획이며, 이용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통합분전반(전기, 통신)은 세대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됩니다.
- 싱크대 후면부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 연결통로 공간,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단자함(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세대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 외부공간 보행로, 조경시설물, 식재, 지역편의시설 등으로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지하3층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복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 주위에 물품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층별 별도 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보일러실은 비난방구역으로 보일러실에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등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마감재 고정을 위한 스테이플 건(타카) 시공 자국은 시공상 불가피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바닥, 뒷면 벽체, 상부 천정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 없음

1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업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 극동건설(주) • 씨앤씨 종합건설(주) • 이에스아이(주)	-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주)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주택공급1부

청약신청 및 임대문의	• 상담전화 : 031-226-3130 • 운영 :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공급센터 (주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1층 102호 (공급센터) - 청약접수 : '26.01.06(화) ~ '26.01.09(금) 10:00~17:00 - 서류제출 : '26.02.02(월) ~ '26.02.05(목) 10:00~17:00 - 현장계약 : '26.05.12(화) ~ '26.05.15(금)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약도)	

2025. 12. 23.